

● 제33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3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5. 12. 22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박성연 의원(22명 찬성)
- 나. 제안일 : 2025. 10. 20.
- 다. 회부일 : 2025. 10. 23.
- 라. 의안번호 : 3190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다양한 기관·단체에서 각종 행사 추진 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칭 또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, 명확한 승인 절차나 관리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사용과 상업적 이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,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여 명칭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후원명칭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용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함 (안 제2조)

- 승인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공익적 행사 중심으로 후원명칭이 사용되도록 함
(안 제3조)
- 신청 절차, 제출서류 및 보완요청 등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(안 제4조)
-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심사·의결 하도록 함
(안 제6조)
- 승인취소, 지도·점검,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함(안 제7조~제9조)
-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의 공개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(안 제10조~제11조)

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등
- 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
- (3)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5. 10. 28.(화) ~ 2025. 11. 1.(토) (5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없음
 - 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수정동의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현재)

1 제정안 개요

- 본 제정안은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,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 것임.

2 제정의 필요성

- 서울특별시의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30일 「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」(예규 제107호)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음.
-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(이하 “후원명칭”이라 한다) 사용승인 요청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, 2021년 89건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164건으로 75건 증가하여, 승인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이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,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대외적 신뢰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.

3 제정안의 구조 및 조문별 검토

가. 제정안의 구조

- 본 제정안은 전체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승인대상 및 절차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<조문체계 및 구성>

구성	주요 내용
제1조(목적)	조례의 목적 명시
제2조(정의)	후원명칭의 정의
제3조(승인대상)	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(제1항) 및 승인제외 대상(제2항) 규정
제4조(사용신청)	후원명칭 사용신청(제1항) 및 보완(제2항) 규정
제5조(사용승인 등)	사용승인 절차(제1항) 및 결과 통보(제2항) 규정
제6조(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)	심사위원회 구성 근거(제1항), 심의·의결 사항(제2항), 위원구성(제3항·제4항), 위원회 운영(제5항·제6항), 간사 지정 등(제7항) 규정
제7조(승인취소 등)	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(제1항), 소명(제2항), 제한(제3항) 규정
제8조(지도·점검)	지도·점검의 근거 및 조치 규정
제9조(결과보고)	결과보고 제출(제1항) 및 미제출 시 조치사항(제2항) 규정
제10조(승인관리 등)	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공개(제1항) 및 보존·관리 의무(제2항) 규정
제11조(무단 사용 시 조치)	무단 사용 시 조치 규정

나. 사용신청(안 제4조)

- 안 제4조(사용신청)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.

- 제1항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신청기한을 “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”로 규정하고 있으나, 행사의 성격이나 일정 확정 시점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.
- 따라서 신청기한을 원칙적으로는 유지하되 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”로 예외를 허용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신청기한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, “후원명칭 사용 예정일”을 “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”로 변경하여 후원명칭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

< 제정안 제4조에 대한 수정의견 >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<p>제4조(사용신청)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신청단체”라 한다)는 <u>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</u>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사용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<u>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
다.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)

- 안 제6조(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)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제1항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조문에 설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, 심사위원회 설치 권한이 있는 “의장”을 설치 주체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.
 - 제4항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정국장으로 하고, 심사위원은 인사과장, 언론홍보과장,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총 5인으로 명시하면서 4인만 지정되어 있어 1인을 추가로 명시해야 함.
 - 제7항은 위원회 간사를 ‘업무 담당 사무관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직급 기준 규정은 실제 담당 직위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간사를 “해당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라. 승인취소 등(안 제7조)

- 안 제7조(승인취소 등)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응하여 승인취소 및 재승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제1항은 승인취소 사유를 승인 요건 위반,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승인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명시함.
 - 제2항은 승인취소에 앞서 신청단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승인취소가 신청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

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법상¹⁾ 의견제출 보장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임.

- 다만 제2항 단서의 “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”는 문언은 승인취소로 인한 권익 제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명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.
- 국민의 권리·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, 긴급성을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경우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.
- 특히 제3항에서 승인취소 시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사용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 보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, 제2항 단서는 삭제하여 소명기회를 일관되게 보장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 제정안 제7조에 대한 수정의견 >

제 례 안	수 정 의 견
<p>제7조(승인취소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</p>	<p>제7조(승인취소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1)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(의견제출) ① 당사자들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
주어야 한다. <u>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</u>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	----- . <삭 제>
③ (생략)	③ (제정안과 같음)

마. 승인관리 등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(승인관리 등)는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황을 관리·공개하고 승인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이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과정의 책임성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²⁾ 및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³⁾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판단됨.

4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예규인 「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후원명칭 제도를

2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공기관의 의무)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,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3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기록물 생산의 원칙)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·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조례로 제정하여 후원명칭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을 내부 행정규칙인 예규만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제도적 규범력을 갖춘 조례로 제정하는 방향은 타당함.
-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, 후원명칭 사용 신청 기한을 원칙과 예외 구조로 완화하고, 심사위원회의 설치 주체 및 간사 직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승인취소와 같이 신청단체에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가 일관되게 보장되도록 관련 단서를 정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봉환	02-2180-7691